

울산지방법원 2021. 7. 6 선고 2020나13991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전 문

원고, 피항소인 A

피고, 항소인 B

변 론 종 결 2021. 6. 8.

판 결 선 고 2021. 7. 6.

제1 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20. 6. 19. 선고 2019가단15938 판결

주 문

1.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.
2.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.
3.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C(이하 'C'라 한다) 및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. 5. 1.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항소취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기초사실

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, 갑 제1,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한다.

가. 원고는 2018. 2. 20. 피고가 추진하는 대전 중구 E 소재 열병합발전사업에 2억 원을 투자(이하 ‘이 사건 투자’라 한다)하였다.

나. 이 사건 투자 약정내용(갑 제1호증, 투자약정서)은 다음과 같다.

투자자 A(원고)은 피투자자인 B(피고)가 진행하는 위 사업에 현금 2억 원을 투자하고, 피투자자는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수익으로 발전소가 완공되고 전기가 생산되어 수익이 창출되는 첫 해에 원금 2억 원을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10억 원은 총 3년에 걸쳐 분할지급하기로 본 문서로 약정한다.

투자원금 2억 원에 대한 보장은 F(주)의 이행(계약)보증보험증권으로 같음하며, 아울러 C(가칭)로 법인이 설립되면 법인 명의로 본 약정서는 다시 작성하기로 한다.

다. C는 2018. 6. 25. 설립되었는데, 원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투자와 관련하여 새롭게 약정서를 작성하지는 않았다.

2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가. 원고의 주장

원고는 이 사건 투자 후 2018. 7. 23. 피고에게 이 사건 투자를 철회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. 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투자금 2억 원을 2018. 9월말 경까지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, 피고는 위 반환약정에 기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투자금 2억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.

나. 판단

살피건대,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투자금 2억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

오히려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2, 3호증, 을가 제4,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

① 원고가 2018. 7. 10. 피고에게 이 사건 투자 철회 및 투자금 반환 의사를 표시한 ‘투자철회 약정서(을가 제5호증)’ 2부를 우편으로 발송하면서, 위 약정서 내용에 동의할 경우 직인을 날인하여 1부는 피고가 보관하고 1부는 원고에게 되돌려달라고 요청하였으나,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, ② 원고가 2018. 7. 23. 작성한 ‘투자 철회 요청서’(갑 제2호증)는 ‘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투자를 철회하고 그 즉시 이 사건 투자금 2억 원 반환의 효력이 생기며, 최대 2018. 9월말까지 위 2억 원을 반환하기로 한다’는 내용인데, 그 말미에는 원고의 도장만 날인되어 있을 뿐, 피고의 도장은 날인되지 아니한 사실(투자 철회 요청서는 위 내용에 비추어 제목 그대로 원고의 요청사항일 뿐이다), ③ 피고가 대표자로 있는 C는 2019. 2. 21. 원고에게, “원고가 2018. 7. 23. 이 사건 투자에 대한 철회를 요청한 것에 대하여, 피투자자 C는 그 철회 요청을 수락하기로 하고, 2019. 4월말까지 이 사건 투자금을 반환할 것을 약속한다. 본 확인서에 대하여 투자자로부터 2019. 2. 28.까지 별도의 서면 이견이 없을 시에는 투자자 역시 본 합의서 내용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.”는 내용의 ‘확인서’를 발송한 사실, ④ 피고는 2019. 3. 1. 원고의 남편 G에게 전화를 걸어 위 ③항의 확인서 내용에 이의가 없는지 묻고, “처음에 투자 의향서(앞서 본 투자약정서) 작성할 때에도 법인인 C로 진행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위 확인서도 C 명의로 한 것이다.”라고 설명하자, G는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.

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투자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,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,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이준영, 판사 장성신, 판사 박관형